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87
----------	-----

2024. 6. 24.(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꽃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5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41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6월 13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꽃임 의원)

가. 제안이유

- 반려동물의 보호와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7조)
-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8조)
- 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 설치·운영 등(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필요성·법적합성)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반려동물 문화의 발전 등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응하여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반려동물, 반려인,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입법형식과 내용이 적절함
- (타당성)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관련법률 제·개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우리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충청북도민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인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보호”란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반려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란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

의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자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

황과 인식 조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2. 반려동물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
3. 기초훈련 및 예절, 반려동물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
4. 반려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 지원
6.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입양
7.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된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여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시·군 또는 소속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 13. (생략)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

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2.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략)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9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2. 제31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
3. 제59조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갱신 및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제69조,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반려동물의 보호와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

2. 비용 발생 요인

- 도내 반려동물의 문화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의 등록비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입양센터 설치, 홍보 및 안내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3. 관련 조문

-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문화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시·군 또는 소속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

- 추계기간 : 2025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
- 내 용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정함

나. 추계 결과

- 기 간 : 2025~2029(5년간)
- 내 용 : 5년간 발생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

